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세 무 1 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73

제출년월일 : 2021. 8.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2021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화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감면 조항에 대하여 그 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나.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화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부속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77조, 「지방세법」 제11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7. 15. ~ 2021. 8. 4.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기타의견 미반영)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반영 내용 및 미반영 사유
인권영향평가	영광군도 고급오락장을 제외하는 것을 참고하여 이익을 주지 않는 측면에서 고려	**미반영**	예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서울시는 미실시했으며, 영광군 재무과에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금지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적용이 별도로 진행중임을 확인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는 유흥종사자의 정의에 대한 여성인권 침해 및 유흥접객원을 두는 영업장의 법적 인정 재고	**미반영**	지방세법시행령에 유흥접객원은 남녀를 불문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방역 정책으로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에 따른 감면이므로 미반영**
	인권침해요소가 많은 업장인 유흥주점업에 대한 세금혜택 반대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 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 ---------- ---------- ---------- ---------- 2024년 12월 31일----------.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과분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 2024년 12월 31일----------.
제4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 2024년 12월 31일----------.
제8조(등록한옥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	제8조(등록한옥에 대한 감면) ----------

현 행	개 정 안
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한옥(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 2024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 2024년 12월 31일----------.
제1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	제1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현 행	개 정 안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2024년 12월 31일----------.
<신 설>	제10조의2(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 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

현 행	개 정 안
	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하여 고율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수준의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개정 및 기존 감면조례의 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어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기획재정국 세무1과장 조민숙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 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

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